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88

발의연월일: 2023. 2. 24.

발 의 자:전재수·김영배·양기대

김경만 · 김태년 · 강득구

박재호 · 최인호 · 송기헌

이병훈 · 김상희 · 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 또한 착용·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설치나 표시물 착용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이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는 「공 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기존의 규제 등으로도 방지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선거의 공정을 해침이 명 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18헌바3 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광고시 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 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제256 조 및 제261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등의 금지"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할 수 없다"를 "하려는 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아니한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제26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시설물설치 <u>등의 금지</u>) ①	제90조(시설물설치 <u>등</u>) ① <u>선거에</u>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u> </u>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u>ठ</u> े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려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u>할 수 없다</u> .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		
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u>신고를 하지 아</u>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u>니하고 할 수 있다</u> .	
<u>다</u> .		

1. •	2. (생	략)
<신	설>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사. (생 략)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宣傳物을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 너. (생 략)

- 2. ~ 4. (생 략)
- ④·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 ⑤ (생 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의 다른 규정
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 ② (현행과 같음)
③
1
가. ~ 사. (혂행과 같음)
<삭 제>

자.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세261조(과대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